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정보신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I. 머리말

본고에서는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조사하였다. 짧은 지면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과 같은 연방차원에서의 특별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 등록 관련 규정들은 개별 법률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독일에서 영업행위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영업법(Gewerbeordnung, GewO)의 관련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1869년 제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체육진흥과 관련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에서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¹⁾ 또한 연방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의 체육진흥법에도 체육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법, 골프연습장업, 체육단련장업 그리고 당구장업은 자유직업군으로 보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직업군의 시설기준은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여 연방 영업법(Gewerbeordnung, GewO)과 관련이 있다. 이 법률은 1869년 제정된 이후 오늘날



1) 예를 들어 베를린 주의 경우 : 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s Sports im Lande Berlin (Sportförderungsgesetz - SportFG) Vom 6. Januar 1989 (GVBl. S. 12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II des Gesetzes vom 10. Mai 2007 (GVBl. S. 195).

까지 적용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이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본 후 독일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II.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1. 관광사업의 유형에 따른 관련 규정

(1) 여행업

1) 원칙

① 영업의 자유(영업법 제1조)

기본적으로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영업법 제1조는 영업을 하려는 누구에게나 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의 종류나 규모, 여행업을 하려는 자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여행업의 운영에는 국가의 허가나 등록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여행 관련 교육이나 직업경험이 없더라도 여행업을 개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²⁾ 및 여행업 관련 규정들에서 여행업자에게 다양한 의

무규정을 두고 있다.

② 신고의무(영업법 제14조)

그러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영업법 제14조에 의해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영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감독의 대상이 아닌 영업의 경우 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신원증명서³⁾와 영업중앙등록청(Gewerbezentralregister)이 발행한 영업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고유 납세관련번호를 특별한 양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외

① 영업감시(영업법 제38조)

영업법은 제38조에서 감독이 필요한 영업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행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할관청은 영업법 제14에 의한 영업신고 후 곧바로 영업수행(활동)의 신뢰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⁴⁾ 관할관청의 감독권은 예방경찰의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 감독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법 제35조에 의한 영업수행이 거부될 수



2) 예컨대 파산사 고객을 위한 금전확보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제651조 이하 규정 참조.

3) 연방중앙등록청법(BZRG, 연방검찰청 관할) 제30조 제5항에 의한 신원조회서.

4) Friauf/Hahn GewO § 38 Rn 18; Tettinger/Wank GewO § 38 Rn.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영업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것이다.⁵⁾ 따라서 영업감독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을 금지된다. 주요한 감독수단은 신원증명서와 영업등록부의 열람이다.

② 상업등기부 등록

여행업 영업신고는 경우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법률형식과는 상관없이 또한 (개인이 아닌 경우) 회사를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GmbH, AG, OHG, KG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여객운송업법에 의한 허가

여행업자가 스스로 여객운송업도 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업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 PBefG)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여객운송법 제2조 제1항). 허가에는 법인 또는 개인 신청자의 사업의 운영능력, 신뢰성, 전문성 등이 심사된다(제12조 제2항).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신원조회도 요구된다(제12조 제3항).

④ IATA 라이선스

여행업자가 항공권을 스스로 발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⑤ 철도 승차권 라이선스

여행업자가 철도승차권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일 철도 주식회사(Deutsche Bahn AG)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 호텔업을 포함한 접객업소

독일의 경우 관광호텔이라 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숙박업(Beherrgungsgewerbe)이란 상위개념 아래 숙박을 위한 시설들을 망라하여 동일한 법률로서 적용하고 있다.

1) 연방영업법

① 영업신고(영업법 제14조)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호텔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법에 의한 허가

호텔 영업자가 숙식 이외에 부수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호텔영업자가 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전시회를 제공하거나(영업법 제33조a), 영업적으로 오락기를 설치하여 제공하거나(제33조c), 영업적으로 그 밖의 오락을 개최하거나(영업법 제33조d), 영업적으로 오락장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영업법 제33조i)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는 순수한 숙박업의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



5) VGH München GewArch 1984.

2) 공중접객업법에 의한 영업허가 (공중접객업법 제2조)

① 개관

(음식·음료·숙박)공중접객업법(Gaststättengesetz, GastG)은 독일의 연방법률로서 영업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 법률은 2006년 연방주의 개혁 이전에는 음식을 제공하거나(음식점), 주류를 포함한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카페 등) 그리고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호텔 등) 이들의 영업 허가와 관련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방주의개혁 이후 공중접객업에 대한 입법권이 각 주에 귀속됨으로써(기본법 제74조 제1항 11호)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각 주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법률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기본법 제125조a 제1항).⁶⁾

② 개정 전

공중접객업법에 의하면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 제1항). 연방제 개혁 이전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음식제공, 음료제공, 숙식 제공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숙식제공에는 숙식이 가능한 모든 시설, 즉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되었다.⁷⁾ 당시 허가가 필요 없는 경

우로는 ㄱ) 우유나 무알콜음료의 제공, ㄴ) 무상 시음회, ㄷ) 무알콜음료 자동판매기를 제공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었다(제2항). 그리고 숙박업의 경우 인원제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즉 동시에 8명 이하의 손님을 숙박시키는 경우(주로 Pension)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었다(제4항).

③ 개정 후

하지만 2005년 6월 21일 탈규제법률에 의하여 ‘숙박업’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제1조 제1항), 다만 투숙객 이외의 제3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2조 제2항 4호). 물론 무알콜음료 및 무상음료시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8명의 인원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호텔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의 경우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하더라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즉 순수한 숙박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영업법에 의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우 영업신고로, 그리고 법인의 경우 영업신고와 상업등기초본이나 법인등기초본의 제출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대표적인 탈규제정책



- 6) 현재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 브란덴부르크(2008년 10월 7일 발효(BbgGVBl. I S. 218)), 튀링엔주(2008년 12월 1일 발효(ThürGVBl. 11/2008 S. 367 ff.)), 브레멘 주(2009년 12월 28일 발효(BremGastG)).
- 7) 국제 전문용어규범(DIN EN ISO 186513)과 독일관광협회(DTV)의 독일 관광정보(TIN)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All-Suite-Hotel, Aparthotel, Boardinghouse, Serviced Apartment, Ferienwohnung, Ferienhaus, Gasthof, Hotel, Hotel garni, Hotelpension, Pension, Jugendherberge, Motel, Privatzimmer 등이다. Hostel은 숙박업소의 종류 표기가 아님.

에 해당한다.

④ 예외의 경우 허가시 검토사항

호텔 등 숙박시설이 투숙객이 아닌 제3자에 게도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관련 서류 및 그 내용으로는 경찰의 신원증 명서, 영업등록초본, 납세증명서, 전염병예방법 (ISG)에 의한 1차 예방접종증명서, 공중접객법 제4조에 의한 교육에의 참석을 통한 전문적 능 력의 증명 등이다.

영업의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임 대계약서, 그리고 호텔을 위한 적절한 공간인지 에 대한 증명서(즉 설계도면, 위생시설을 포함한 영업공간의 개요서 등)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손님을 위한 침실은 영업자나 제3자의 주거내에 있어서는 아 니되고, 숙박공간은 복도에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져야 하며, 출입문은 번호순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내외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고, 1인용 객 실의 크기는 최소 8평방미터이고, 2인 이상 침실 은 침대 한대당 추가 면적이 4평방미터여야 한 다. 이 경우 부수공간인 욕실 및 화장실은 여기 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적 감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관한 입법권은 각 주에 있다고 보고 있다.

9) 베를린주의 경우 주건축법(BauO Bln vom 11. Juli 2006 (GVBl. S. 819))은 제60조 이하에서 건물의 신축, 변경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BetrVO vom 10. Oktober 2007(GVBl. Seite 516))은 제 2조 제4항 8호에서 숙박업소를 특수건축물을 규정하고, 제14조 이하에서 12 개 이상의 손님용 침대를 갖춘 숙박시설의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인 허가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비상구 관련 규정(제1항)과 화재시 행동수칙 비치 등(제2항) 그리고 60개 이상의 손님용 침대를 수용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베를린 소방서와 협의하여 화재예방책을 세울 것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최소한 전체 숙박공간의 10%는 장애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에 의한 허가

① 개관

건축과 관련한 허가사항 등은 각 주 건축법 (Landesbauordnung, LBO)에 규정되어 있다.⁸⁾ 예컨대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건축법 규정을 참 조하여 살펴본다. 동법 제49조 이하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호텔 등 숙박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건 축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호텔 등 특별건축물의 허가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요건(제3조 제1항)보다 특 별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특별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20 가지의 특별건축물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의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제2항 13호는 12개 이상의 침대를 가진 숙박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12개 이하의 침대를 둔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해당되 어 제38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⁹⁾

③ 장애물 없는 시설

제39조에서는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

하는 건물이나 시설들은 그 목적에 맞게 이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에 숙박시설도 포함된다(제39조 제2항 16호).

④ 건축허가의 시기

건축허가는 숙박업의 영업신고 이전에 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순수한 숙박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3) 기타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는 영업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신축 등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경우도 영업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결

독일의 경우 관광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관광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등록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의 의미는 관광사업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행정규제 없이 자율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행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할 수 있고, 숙박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독일관광협회(DTV)와 같은 단체들의 자율규제가 기능하고 있다.

III. 독일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1. 연방 영업법에 의한 신고의무

독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법 제14조에 의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도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예외적인 영업에 한해서 허가나 감시를 필요로 한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허가나 감시가 필요한 직업군이 아니다. 따라서 관할기관에 신고하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시에 필요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2. 연방 임시시온방지법과 스포츠시설의 소음방지 규칙의 준수

스포츠 시설업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여 스포츠 시설업자는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연방 임미시온방지법¹⁰⁾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특별법인 임미시온방지법이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인간, 동식물, 땅, 물, 대기 및 문화재 그리고 그 밖의 재화를 유해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은 1974년 3월 15일 제정되어, 최근 2010년 8월 11일 개정되었다.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법률에 근거한 시행규칙인 스포츠시설의 소음방지규칙이 적용된다.¹¹⁾

(2) 스포츠시설의 소음방지규칙

이 시행규칙은 연방 임미시온방지법 제23조 제1항¹²⁾을 근거로 하여 연방정부에 의하여 1990년 5월 14일 고시되어 2006년 2월 9일 최근 개정되었다(BGBl I Nr. 7, S. 324).

1) 적용범위(제1조)

이 시행규칙은 스포츠 시설이 스포츠를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연방 임미시온방지법 제4조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 시설의 설립, 제공 및 운영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시설이란 스포츠를 하기에 특정되어 있는, 연방 임미시온방지법 제3조 제5항 제1호의

장소에 고정된 시설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과 긴밀하게 장소적 또는 운영상 관련이 있는 시설도 스포츠 시설에 해당한다. 스포츠 시설에서의 출입을 위한 시간도 이들 시설의 이용시간에 포함된다.

2) 소음기준치(제2조)

① 건물 바깥에서 측정하는 경우의 소음기준치(제2항)

(가) 영업지역

매일 휴식시간 외 65 dB(A)

매일 휴식시간 내 60 dB(A)

야간 50 dB(A)

(나) 핵심지역, (시골)마을지역 및 혼합지역

매일 휴식시간 외 60 dB (A)

매일 휴식시간 내 55 dB (A)

야간 45 dB (A)

(다) 일반 주거지역 및 소규모 집단거주지

매일 휴식시간 외 55 dB(A)

매일 휴식시간 내 50 dB(A)

야간 40 dB (A)

(라) 순수 주거지역

매일 휴식시간 외 50 dB(A)

매일 휴식시간 내 45 dB(A)

야간 35 dB (A)



10)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BImSchG).

11) Achtzehn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Sportanlagenlärmschutzverordnung - 18. BImSchV).

12) 제23조 제1항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연방정부에게 시행규칙을 규정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마) 병원 및 양로원 등 요양시설 지역

매일 휴식시간 외 45 dB (A)

매일 휴식시간 내 45 dB (A)

야간 35 dB (A)

② 주거공간내의 건물로부터 소음기준치

주거하는 공간내에 있는 건물로부터 소음이 전달이 있는 경우, 그 소음 전달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스포츠 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공해의 수치가 매일 35 dB(A), 야간 25 dB(A)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스포츠 시설의 운영자는 언급한 소음기준치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항).

③ 단시간 소음충격

개별적인 단시간 소음충격은 제2항의 소음기준치가 낮에는 30 dB(A) 밤에는 20 dB(A) 이상 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별적 단시간 소음충격은 제3항의 소음기준치가 10 dB(A)을 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제4항).

④ 시간대(제5항)

소음기준치의 시간대는 아래와 같다.

(가) 평일 낮 : 6:00 – 22:00, 일요일 및 공휴일 :

7:00 – 22:00

(나) 평일 밤 : 0:00 – 6:00, 22:00 – 24:00, 일요일 및 공휴일 :

0:00 – 7:00, 22:00 – 24:00

(다) 평일 휴식시간 : 6:00 – 8:00, 20:00-22:00,

일요일 및 공휴일 : 7:00 – 9:00, 13:00 –

15:00, 20:00 – 22:00

(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13:00 – 15:00 휴식시간은, 스포츠 시설의 이용시간 또는 9:00 – 20:00에 있는 일요일 및 공휴일의 스포츠 시설의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고려된다.

3) 조치(제3조)

소음기준치의 준수 의무(제2조 제1항)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 운영자는 특히 ㄱ. 확성기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에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확성기의 분산 설치 및 소음 측정수치기의 설치 등과 같은 조치. ㄴ. 기술적 건축적 소음방지장치(방음시설, 바닥재, 방음벽 등). ㄷ. 관중이 과도하게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소음경적기를 설치해야 한다. ㄹ. 출입구 및 주차장에서 운영상 및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건축법에 의한 허가

(1) 개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주로 각 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LBO)에 규정되어 있다.¹³⁾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건축법 규정은 제49조 이하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하거나 변경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



13)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적 감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관한 입법권은 각 주에 있다고 보고 있다.

우에는 건축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건축물로서 스포츠 시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요건(제3조 제1항)보다 특별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특별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20가지의 특별건축물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의 건축도 여기에 해당한다(제2항 7호). 이러한 특별건축물은 주로 대형 스포츠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장애물 없는 시설

건축법 제39조는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 시설도 포함된다(제39조 제2항 6호).

(4) 건축허가의 시기

건축허가는 스포츠 시설업의 영업신고 이전에 받아야 한다.

4. 소결

독일의 경우 소규모 체육시설업, 즉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

한 사항은 스포츠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법에 의한 신고의무와 소음방지규칙에 의한 규칙준수의무의 이행으로 이들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우리와 같이 운동전용면적이나 당구대수 등과 같은 국가의 행정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관련업계의 단체가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기본법 제12조 제1하에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영업법 제1조에 의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탈규제정책을 의미한다.

박 희 영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